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186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24. 8. 20.

판결 선고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A 및 선정자 C, D, E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92.52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2. 28.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최윤중

별지